

##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(신·구조문대비표)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 및 제125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) ①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. 다만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관세법」 제10조 및 제10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-----.</p> <p>제2조(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) ① 「관세법 시행령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. 다만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한다.</p> <p><u>② 영 제2조제3항 또는 제126조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별</u></p>	<p>○ 조문 정비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신청 서식 마련</p>

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한 후 당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사업장의 손실 또는 위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납부기한을 재연장 할 수 있다.

지 제1호 서식의 납부기한 연장(분할납부) 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최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납부기한을 재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장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납부기한 재연장(분할납부 횟수 확대) 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○ 납부기한 재연장 승인권자 하향 조정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 도모

제3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3조(재검토기한) -----  
-----  
----- 2022년 7월 1일-----  
-----  
6월 30일-----  
-----  
-.

<별지1호> 납부기한 연장(분할납부) 승인 신청서

<별지2호> 납부기한 재연장(분할납부 횟수 확대) 승인 신청서

**부칙**

<관세청고시 제2022-00호(2022. 0. 00.)>  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2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
○ 재검토기한 재설정

○ 신청 서식 마련